

의안번호	제 38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7월 일 (제282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송은섭 의원 외 24인
발의연월일	2009년 7월 일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송은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6
----------	-----

발의연월일 : 2009년 7월 일

발 의 자 : 송은섭 · 박종갑 · 심홍섭 · 박영웅 ·
권광택 · 민경환 · 한창동 · 장주식 ·
김광수 · 김화수 · 이필용 · 김인수 ·
이종호 · 오용식 · 강태원 · 김환동 ·
이영복 · 이규완 · 이연구 · 연만흠 ·
정운숙 · 최미애 · 이기동 · 이범윤 ·
최재옥 (25인)

1. 제안 이유

-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상 육성된 품종을 등록하고 이를 공급함으로써 직무육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직무육성자는 도지사에게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의무화(안 제3조)
- 나. 충청북도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안 제4조)
- 다. 도지사의 품종보호출원 의무 규정(안 제5조)
- 라.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마.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과 이에 관한 처리사항 명기(안 제8조~안 제13조)

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각종 보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안 제14조~안 제16조)

사. 직무육성품종의 장려·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한 충청북도종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안 제18조~안 제21조)

아.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대한 비밀누설, 도용금지 등(안 제23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 원예생명연구과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6.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수익을 허락하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정해진 시간·장소·내용적 제약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전용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수익을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

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자의 직무육성품종이 제3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도는 직무육성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한 경우에는 직무육성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도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한다.

제5조(출원과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도지사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원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원

제7조(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 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8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10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8조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면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도보 또는 인터넷(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이나 실시료는 일반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등) 직무육성자나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원예생명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부장, 기술지원부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단체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명 이상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1명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5. 도의 농업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을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종자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육성품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3. 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과 범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직무육성품종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등) 도 소속 공무원, 위원회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일 : _____

업 체 명 : _____

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법인 소속 회원수 : 명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분	온실 및 하우스면적(동/㎡)	저장고(동/㎡)	실험실(동/㎡)	기타
시설				
장비				

※ 종묘생산관련 장비 보유대수

3. 묘목 생산면적 및 공급실적

종자업 등록년수	포장면적(㎡)	최근 3년간 묘목 공급실적(주)			
		계	년	년	년

※ 판매계약서 또는 계산서는 요구시 제출

4.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합 계					

○ 품종별 실시 사업계획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견적서 별첨양식>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 계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년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계				

○ 작물명(품종명)

년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계				

실시료 견적서 작성요령 해설

[예] 장미 “매혹” 을 5년간 3만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년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1	3,000주	1,500원/주	2%	90,000
2	5,000주	1,500원/주	2%	150,000
3	5,000주	1,500원/주	2%	150,000
4	7,000주	1,500원/주	2%	210,000
5	10,000주	1,500원/주	2%	300,000
합 계	30,000주	-	-	900,000

○ 해당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가장중요)

-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년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제한 수량으로서 당해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
-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당해품종의 실시기간(5년이내)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

※ 계약희망자는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해야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실시수량이 64천본(전체예정수량의 20%) 이상이라야만 수의계약신청이 가능함.

-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로 정함.

장미 매혹을 5년간 100,000주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0주×1,500원 × 2% = 3,000,000원

○ 추가실시료

- 처음 계약당시의 생산계획 종묘량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판매액의 2%의 경상실시료를 품종보호권자에게 납부
-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서 그 실시상황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고, 실시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품종별 실시실적을 기록 비치하고 매년(계약일 도래 후 1달 이내)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도 계약할 수 있음.
 - ※ 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기관에 문의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신청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총판매예정수량이 전체의 20%(320천본)이상 신청한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총판매예정수량 및 원종의 분양가능량을 감안하여 판매예정수량이 많고 최근 3년간 장미종묘의 생산, 판매실적이 많은자 순으로 우선 계약함.

※ 실시권 계약자는 국리종자관리원에 실시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관 계 법 령

□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1.1.26>

1.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4.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라 함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라 함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개정 2007.8.3>) ①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개정 2001.1.26,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07.8.3>)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 (비밀누설죄등) 농림수산식품부직원(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심판위원회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